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사무의 위탁 보고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2년 3월 1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 제21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 및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제1항에 따라 2020년 시의회의 동의를 통해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음.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제2항에 따르면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게 되어 있으므로 교육위원회에 2021년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

나.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학원법」 제21조제3항

2) 추진 필요성

- 2020년에 비해 2021년 연수 참석률이 높아졌고,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세부 결과는 [별첨 가] 참고)
- 또한, 연수계획 시행에 대해 위탁함으로써 학원 코로나19 방역 및 건전 운영을 위한 점검 등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22년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시행에 대해서도 기존 수탁기관과 위·수탁 계약을 진행하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교육청에서 수립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전반(교재 제작, 장소 대관, 연수 안내 등)

라. 위탁 기간: 2022. 3. ~ 2022. 12.

- 연수결과(성과)에 따라 매년 재계약 여부 결정

마. 수탁자 선정방식

-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 연수: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제3항에 따라 (사)한국학원총연합회에 위탁
- 교습자 연수: 「학원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습소 관련 기관 또는 법인을 지정·고시[현재 수탁기관은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바. 예산 규모: 금164,750,000원(금일억육천사백칠십오만원)

-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예산: 금114,750,000원(금일억일천사백칠십오만원)
- 교습자 연수예산: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3. 참고사항 : 별첨

가. 위탁 성과보고서

나. 관계 법령

2021년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결과 보고

평생교육과

I 관련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 「2021년 학원설립·운영자 등 연수계획」 (평생교육과-3678, 2021. 2. 25.)

II 2021년 연수 운영 개요

○ 개요

구분	주요 내용	비 고
운영 형태	· 학원 및 교습소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 「학원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 학원단체: (사)한국학원총연합회 · 교습소단체: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연수 대상	·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연수 기간	· 2021. 9. ~ 12.	
연수 방법	· 사이버연수	· 2020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연수로 진행함

○ 연수 주요 내용

- 학원 관련 법령 개정 및 준수 사항
- 주요 민원 및 점검 지적 사례
- 성범죄 및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신고의무, 긴급복지 신고의무 교육
-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교육
- 시설 및 차량 등 재난 대비 안전 관리, 개인정보보호 등

Ⅲ 2021년 연수 실시 결과

① 결과 총괄

(단위: 명)

구 분	연 수 결 과				계	
	학원설립·운영자		교 습 자			
	대 상	참석(%)	대 상	참석(%)	대 상	참석(%)
(사)한국학원총연합회	14,739	11,014 (74.8)		0 (0)	14,739	11,014 (74.8)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59* (0.4)	10,191	4,753 (46.6)	10,191	4,812 (19.3)
계	14,739	11,073 (75.1)	10,191	4,753 (46.6)	24,930	15,826 (63.5)

* 각 단체 간 교차이수(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자 연수 이수 가능) 허용

② 최근 3년간 실시 결과

(단위: 명, 천원)

구 분	운영 형태	연 수 결 과						예 산 액
		학원설립·운영자		교 습 자		강 사*		
		대 상	참석(%)	대 상	참석(%)	대 상	참석(%)	
2019년	위탁	15,150	12,437 (82.1)	10,841	7,375 (68.0)	3,583	168 (4.7)	184,750
2020년	위탁	14,839	8,826 (59.5)	10,076	4,684 (46.5)	0	0 (0)	134,750
2021년	위탁	14,739	11,073 (75.1)	10,191	4,753 (46.6)	0	0 (0)	164,750

* `19년도는 외국인강사 연수만 운영하였고, `20, `21년도는 코로나19로 강사 연수 미운영함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4분기에만 사이버연수로 실시하여 참석률이 낮아짐

Ⅳ 예산 집행 현황

① 총괄 현황

(단위: 원)

구 분	예 산 집 행 현 황			비 고
	예 산 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사)한국학원총연합회	117,580,000	150,281,120	▲32,701,120*	예산 초과 지출*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47,170,000	47,146,500	23,500	반납 예정
계	164,750,000	197,427,620	▲32,677,620	

* 초과지출사유: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자체 집행액(교재 제작 및 운송비, 추가 인건비 등) 포함

② 연수주관별 정산 내역

○ (사)한국학원총연합회

1) 예산 집행

(단위: 원)

위탁액	지출액	잔액 (A)	환수액 (B)	이자발생액 (C)	반납금액 (A+B+C)
117,580,000	117,580,000	-	-	30,790	30,790 ※ 반납 예정

※ 초과지출액 32,701,120원은 한국학원총연합회 서울특별시지회 자체 부담

2) 세부 내역

(단위: 원)

지출내용	지출액	정상사용금액	환수금액	환수금액 내역	비고
강사료 (원고료 포함)	2,626,560	2,626,560	-		
인쇄비	36,575,000	36,575,000	-		
우편요금	63,150	63,150	-		
식대	6,126,560	6,126,560	-		
인건비	33,803,160	33,803,160	-		
운영비 (사무운영, 간식 등)	27,567,850	27,567,850	-		사이버연수 관련 비용 포함
기타부대경비 (통신료, 공과금 등)	10,817,720	10,817,720	-		
합계	117,580,000	117,580,000	0		

○ (사)한국교습소총연합회

1) 예산 집행

(단위: 원)

위탁액	지출액	잔액 (A)	환수액 (B)	이자발생액 (C)	반납금액 (A+B+C)
47,170,000	47,146,500	23,500	-	3,346	26,846 ※ 반납 예정

2) 세부 내역

(단위: 원)

지출내용	지출액	정상사용금액	환수금액	환수금액 내역	비고
강사료 (원고료 포함)	800,000	800,000	-		
인쇄비	15,380,250	15,380,250			
우편요금	10,141,060	10,141,060	-		
식대	422,000	422,000	-		
인건비	1,871,700	1,871,700	-		
운영비 (사이버연수 등)	18,500,000	18,500,000	-		
기타부대경비 (수수료, 보험 등)	31,490	31,490	-		
합 계	47,146,500	47,146,500			

V 연수 만족도 조사 및 운영 평가 의견

1] 만족도 조사결과

○ 설문 참여 현황

(단위: 명, %)

구분	연수 참여자	응답자	응답률	비고
학원설립·운영자	11,073	9,736	88.4	
교습자	4,753	5,220	109.8	연수대상 선정 기준일 이후 설립한 신규 교습자 등 포함

○ 문항별 만족도

(보통 이상 비율, 5점 척도, 단위: %)

구분	연수장소 (홈페이지)	연수내용	업무 연관성	시간배분	내용 이해도	강사 전문성	행정 서비스
학원설립·운영자	95.8	97.0	97.0	90.2	97.9	97.8	96.6
교습자	99.0	99.1	98.6	92.4	99.4	99.4	98.7

② 운영 평가 의견

○ 문항별 응답 현황

1) 학원설립·운영자 대상

(단위: 명, %)

평가문항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계
	응답 수	응답 률	응답 수	응답 률	응답 수	응답 률	응답 수	응답 률	응답 수	응답 률	
1. 연수 장소의 적합성	3,457	35.5	3,710	38.1	2,164	22.2	128	1.3	277	2.8	9,736
2. 연수 자료의 충실성	3,405	35.0	3,995	41.0	2,047	21.0	89	0.9	200	2.1	9,736
3. 업무수행과 연수와의 적절성	3,243	33.3	3,926	40.3	2,272	23.3	113	1.2	182	1.9	9,736
4. 연수 시간배분의 적절성	2,696	27.7	2,956	30.4	3,126	32.1	681	7.0	277	2.8	9,736
5. 연수 내용의 이해도	3,185	32.7	4,216	43.3	2,135	21.9	46	0.5	154	1.6	9,736
6. 강사의 만족도	3,209	33.0	4,240	43.5	2,074	21.3	57	0.6	156	1.6	9,736
7. 연수담당자의 행정서비스	3,093	31.8	3,898	40.0	2,410	24.8	150	1.5	185	1.9	9,736

2) 교습자 대상

(단위: 명, %)

평가문항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계
	응답 수	응답 률	응답 수	응답 률	응답 수	응답 률	응답 수	응답 률	응답 수	응답 률	
1. 연수 장소의 적합성	2,298	44.0	2,192	42.0	678	13.0	35	0.7	17	0.3	5,220
2. 연수 자료의 충실성	2,093	40.1	2,329	44.6	751	14.4	31	0.6	16	0.3	5,220
3. 업무수행과 연수와의 적절성	1,874	35.9	2,197	42.1	1,074	20.6	50	1.0	25	0.5	5,220
4. 연수 시간배분의 적절성	1,339	25.7	1,720	33.0	1,765	33.8	328	6.3	68	1.3	5,220
5. 연수 내용의 이해도	1,856	35.6	2,453	47.0	881	16.9	22	0.4	8	0.2	5,220
6. 강사의 만족도	1,997	38.3	2,449	46.9	745	14.3	21	0.4	8	0.2	5,220
7. 연수담당자의 행정서비스	1,791	34.3	2,356	45.1	1,003	19.2	48	0.9	22	0.4	5,220

③ 분석 결과

○ 연수 만족도 향상

- 평가문항별 만족도 대부분이 2020년에 비해 소폭 상승

※ 특히, 교습자 연수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도 평가문항 다수에서 99% 이상 만족(보통 이상)

○ 전년대비 참석률 상승

- 2020년에 비해 연수 참석률이 상승하였고, 특히, 학원설립·운영자의 경우 대폭 상승하였음(학원설립·운영자 참석률 59.5%→75.1%)

<최근 3년간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대상 인원 및 참석 현황>

(단위: 명, %)

구분	횟수(기간)	대상인원	참석인원	참석률
2019년	29회	25,990	19,812	76.2
2020년	10월 ~ 12월	24,915	13,510	54.2
2021년	9월 ~ 12월	24,930	15,826	63.5

- (학원설립·운영자) 총 14,739명 중 11,073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은 전년대비 15.6% 증가하였고, 참석 인원은 2,247명 증가함
- (교습자) 총 10,191명 중 4,753명이 참석하여 참석률은 전년대비 0.1% 증가하였고, 참석 인원은 69명 증가함
- (내·외국인강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강사 대상 연수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 「학원법」 외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법정무교육 홈페이지를 별도 운영하여 강사 및 직원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함(아동학대·긴급복지·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VI 개선 방향

1] (결과 반영) 만족도 및 개선사항을 2022년 연수 시 반영

○ 집합연수 및 외국인강사 대상 연수 추진

- 사이버연수 시 내용 전달에서의 집중력 저하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집합연수 우선 추진
- 외국인강사 대상 연수는 의무사항이므로 매년 반드시 실시하고 이수 여부가 관리될 수 있도록 위탁연수기관에 요청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 사이버연수로 전환 실시 검토

○ 전문성 강화 및 목적에 충실한 연수 실시

- 집합연수 시 목적 외 행위 근절을 위해 현장 모니터링 실시
- 현장 사례 중심 내용을 강의안과 교재에 포함하고, 집합연수 시 교육 지원청 담당 공무원 강의의 전문성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 요청

○ 참여도 제고

- 집합연수 시 장소 접근성 확보를 위해 지역별로 교통 요지를 선정하고, 균등하게 장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위탁연수기관에 요청
- 중간·기말고사, 각종 수시 및 정시 등 대입 준비 시기를 고려하여 집합연수 일정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제2021-151호, 2021. 3. 29.)로 연수 불참에 대한 행정처분(벌점 부과)이 어려우므로 연수 불참 학원 등을 다음 해 정기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② (소통 공유) 연수 교재 및 강의안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학원 관계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다양한 학원 행정 및 지도 사례를 담당 공무원과 공유함으로써 전문성 제고. 끝.

【별첨 나】

관계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약칭: 학원법)

[시행 2019. 8. 1.] [법률 제11212호, 2012. 1. 26., 타법개정]

제15조의4(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교육감은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 및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학원법 시행령

[시행 2020. 3. 31.] [대통령령 제30547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3. 28.] [서울특별시조례 제7017호, 2019. 3. 28.,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교육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단순 행정사무로써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4조의2(의회동의 및 보고) ① 교육감은 제4조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의 동의에 따라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기존 또는 새로운 수탁기관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9. 6. 10.]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994호, 2019. 6. 10., 일부개정]

제2조의2(동의안의 제출) ① 소관 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 절차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